

199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 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11월 24일 남구청장 제출

나. 회부 일자 : [1992년 11월 26일(총무위원회)]

[1992년 12월 1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 상정 일자 : [제18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1992년 11월 30일)]

[원안 상정]

[제18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년 12월 1일)]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황경조)

가.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1991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예비비 예산액 : 1,022,429,000원

○ 예비비 지출액 : 608,136,000원

- 지방의회 선거관리 위탁금 : 126,058천원
- 의회사무과 비품 구입 : 2,900천원
- 지방의회 의원 선거 불법선거 감시 장비 : 3,200천원
- 어업지도선 건조 설계 용역 시설 부대비 : 12,000천원
- 지역교통과 신설 사무실 임차료 : 121,000천원
- 일용인부 퇴직금 및 공상치료비 : 30,000천원
- 집중호우재해복구공사(3건) 경비 : 151,634천원
- 태풍피해지역 특별비상 방역 : 5,388천원
- 민락동 매립지 무허가 시설 철거 관리 : 36,984천원
-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 16,704천원
- 공무원 연금 부담금 부족분 : 6,000천원
- 민락매립지 철거후 사후관리 소요 경비 : 32,562천원
- 태풍 글래디스 피해 복구 사업 : 20,000천원
- 민원편의시설 설치 : 29,230천원
- 태풍글래디스 피해건축물 복구비 보조 : 4,476천원

○ 예비비 지출 잔액 : 414,293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무상)

0.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 불가능한 긴급한 상황 발생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의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시 지출해야하는 지출의 특례에 해당하는 과목인데도,
0. 결산검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총 15건에 대해 608,136천원을 지출함에 있어,
0. 지역교통과 신설로 인한 사무실 전세 보증과 태풍 글래디스로 인한 침수 지역 방역비 등 일부는 예측 불가능과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불때 예비비를 지출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0.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금, 공무원 공상치료비 등 일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후 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지출했던 것은 관련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법을 잘못 남용한 부당한 지출 사례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 내용	답변 내용
박수용 위원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비 지출의 본질적인 성격에 대한 설명· 세입예산액과 세입 총수입 액의 차이가 약8,9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세원 포착 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예산집행잔액이 140억은 예측예산편성의 문제가 있지 않는지.· 또한 실무책임자께서 예산 책정시 분야별 검토 시정 한 사실이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재정법 제120조의 제 2항에 의함이며· 예비비는 긴급한 사안 발생시 지출로록 되어 있으며,· 예산액이 91년도에는 100분의 1 책정되었으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상당한 금액이며, 또한 예산은 어디까지나 계획 이므로 시행 착오가 조금씩 있습니다.

질의자	답변자	질의 내용	답변 내용
박수용 위원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문제점을 시정 요구하면 행정 태성이 젖어 시정하겠다, 개선하겠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시정이나 개선이 되지 않는데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비 지출 목록은 보니까 일부는 지출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나 태풍 피해 복구, 신설부서의 전세보증금, 방역비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데도 집행하는 것은 진정 진박한 상황에는 사용 못하지 않는가. 불용액이 많은데 이것은 예산 집행에 대한 연구 분석이 부족하여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불용액 관계는 저희 집행 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음.
박남서 위원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락매립지 철거후 사후 관리 경비조로 지출한 3,256만 2,000원이 꼬예비비를 지출해야만 하는 긴급한 사항이 있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비는 세출예산을 보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91년 8월 13일 민락동 매립지 사유지내 무허가 포장 횟집, 유기장 등을

질의자	답변자	질의 내용	답변 내용
박남서 위원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1년 8월 13일 철거후 당시 2차,3차 추경에 반영할 기회도 있었는데 굳이 예비비로 지출해야 만 하는 이유는 · 매립지가 허허벌판이고 사유지인데 우리 예산으로 많은 인건비를 투입하여 경비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경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이 실제로 들어서 지난달에만도 	<p>일제히 정비, 철거하고 철거된 무허가 횟집 등이 도로를 무단점용하거나 집단 노상화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경비원을 고용하게 되어 91년 8월 13일부터 91년 11월 30일까지 141일 간 사역인원은 연3,440명이고 인부임은 1인당 1일 21,000원으로 총계 6,914만 4,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당시 8월 13일 철거 후 부득이 경비원을 투입해야 할 긴박한 사유가 있었고 추경이 9월말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 그 앞의 인건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임. 또한 그 당시는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음. · 당시는 매립지에 무허가 횟집 난립으로 인해서 사회 질서를 문란케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어 일제 철거후 예방을 위해 경비를 했음.

질의자	답변자	질의 내용	답변 내용
박 남서 위원	기획감사실장 정석조	철거를 했는데 경비하는데 헛돈이 지출된 것이 아닌 지	경비원을 고용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밤낮으로 경비할 수 없었기 때문. 또한 경비할 때는 무허가 가 없었고 경비가 끝난 9월부터 다시 무허가가 들어서 직원을 동원 철거 하게 되었음.

4. 토론효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승인 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